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대한 해설서

고문의 금지

2023년 2월 28일 제1판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목차.....	3
일러두기	5
I. 일반적 고려사항.....	6
A. 제3조의 해석.....	6
B.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	6
C. 제3조의 범위	6
D. 금지된 대우 또는 처벌의 유형	7
1. 고문.....	7
2.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	8
3.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	9
E. 협약 제2조와 제8조의 관계	10
II. 국가 대리인이 가하거나 조장하는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12
A. 전제	12
B. 증거 평가.....	12
1. 증명 기준.....	12
2. 증명 책임.....	13
C. 국가 대리인의 강제력 행사.....	13
1. 일반적 고려사항.....	13
2. 특정 구속 도구 또는 수단 사용	14
D. 알몸 수색 또는 은밀한 신체 수색.....	15
E. 군 복무	15
F. 구금 조건	15
G. 구금 중 의학 치료.....	16
H. 피해자의 친인척이 겪는 고통	16
1. 전제	16
2. 실종자의 친인척.....	16
3. 사망이 확인된 경우	17
4. 시신의 대우.....	17
5. 기타.....	18
I. 유죄판결 및 양형	18
1. 형사 책임의 연령	18
2. 과도하게 비례성을 상실한 선고.....	19
3. 사형.....	19
4. 종신형	20
J. 인도 및 추방.....	21
K. 강제 의료 개입.....	21
a. 일반 원칙.....	21
b. 강제 음식물 투여	21

c.	강제 정신과 치료	22
d.	비자발적 불임시술	22
e.	사람의 신체에서 약물 및 기타 증거물 제거	23
III.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23
A.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범위	23
B.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본질	24
1.	적절한 입법 및 규제 체계를 수립할 의무	24
2.	예방적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	25
C.	실제 사례	25
IV.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의무	26
A.	절차적 의무의 범위	26
B.	조사 목적	27
C.	검증의 본질 및 정도	27
D.	조사 기준	27
1.	전제	27
2.	독립성	28
3.	충분성	29
4.	즉시성 및 합리적 신속성	30
5.	공개 검증 및 피해자의 참여	31
E.	기소, 제재 및 보상 관련 사안	31
F.	증오 범죄 조사	32
G.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절차적 의무	33
H.	절차적 의무의 부활	33
	인용 판례 목록	34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3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54 및 *Jerónovičs v. Latvia* [GC], 2016, § 109).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89).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6,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N.D. and N.T. v. Spain* [GC], 2020, § 110).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15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đ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서의 전자 버전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하이퍼링크는 재판소가 선고한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재판소의 두 가지 공식 언어) 텍스트로 연결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I. 일반적 고려사항

A. 제3조의 해석

1. 제3조를 해석할 때 재판소는 협약의 목적과 의도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의 규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해석할 때는 민주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도구라는 협약의 기본 정신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87).
2. 협약 제3조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실제로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금지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명의 가치이다(*Bouyid v. Belgium* [GC], 2015, § 81). 이러한 금지 조항은 절대적인 것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 또는 테러, 조직범죄, 이민자·난민 유입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그 이행이 정지될 수 없으며, 관계인의 행위(*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9, § 126;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315;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95; *Z.A. and Others v. Russia* [GC], 2009, §§ 187-188) 또는 관계인이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범죄의 성격과도 무관하다(*Ramirez Sanchez v. France* [GC], 2006, § 116; *Gäfgen v. Germany* [GC], 2010, § 87 참조).

B.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

3. 제3조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리인이나 공공 당국이 고의로 가한 행위로 사람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당한 경우 적용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할권 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말도록 요구하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2012, § 111).
4.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제3조에 따라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의무는 첫째, 보호를 위한 입법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의무, 둘째, 이미 정의되어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에 반하는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특정 개인을 보호할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 셋째, 그렇게 대우해도 된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의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무는 “실체적(substantive)”으로 분류되는 반면, 세 번째 의무는 국가의 절차적 의무에 해당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78).

C. 제3조의 범위

5. 협약 제3조의 금지규정이 모든 학대 사례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Savran v. Denmark*, [GC], 2021, § 122). 재판소가 정립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대행위가 제3조에 해당하려면 ‘심각성의 최소기준(minimum level of severity)’에 도달하여야 한다. 이 수준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우한 기간, 신체와 정신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사례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Muršić v. Croatia* [GC], 2016, § 97).
6. 심각성을 구분하는 기준선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른 요인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a) 학대의 의도나 동기와 함께 학대를 가한 목적(비록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에서 배제할 수 없다), (b) 긴장과 감정이 고조된 분위기 등 학대가 가해진 정황, 그리고 (c)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부가 이러한 요인이다(*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2016, § 160).

7. 관련자가 받은 학대가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려면(특히 학대의 가해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재판소는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개별로 이루어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는 모두 피해자에게 “가해진(subjected)” 대우가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임을 전제로 한다. 즉, 그저 우연이나 부주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따라 개인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라면 제3조가 의미하는 “가해진” “대우”의 결과로 볼 수 없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121 및 123).

8. 다만,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이거나 더 흔하게는 법 집행관과 마주한 경우, 법 집행관이 개인에게 저지른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한다고 간주된다면 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00-101).

D. 금지된 대우 또는 처벌의 유형

1. 고문

9. 고문의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또는 절대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였다(*실질적으로 고문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 유죄 판결 및 처벌에 대한 시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의견* [GC], § 59, 2022). 재판소는 협약 제3조에 명시된 고문의 개념과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개념을 구분하여 특정 학대가 고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협약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매우 심각하고 잔인한 고통을 초래하는 의도적이고 비인도적 대우에 대해 특별한 오명(汚名)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 유엔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UNCAT,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도 이러한 구별이 명시되어 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67, *Selmouni v. France* [GC], 1999, § 96;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426).

10. 대우의 심각성 외에도, 고문방지협약(UNCAT)에서 인정하는 의도성 요소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고문은 특히 정보 또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처벌하기 위한 목적 또는 협박할 목적으로 고도의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Selmouni v. France* [GC], 1999, § 97; *Salman v. Turkey* [GC], 2000, § 114; *Al Nashiri v. Poland*, 2014, § 508; *Petrosyan v. Azerbaijan*, 2021, § 68).

11. 협약은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문”이 아니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분류되었던 행위가 앞으로는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재판소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라는 영역에서 점점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평가할 때 더 큰 단호함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취했다(*Selmouni v. France* [GC], 1999, § 101).

12.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고문의 금지가 국제법상 강행규범 또는 절대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강조하였다.

13.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우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국가의 대리인이 경찰에 구금중인 청구인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하여 벌거벗기고 팔을 등 뒤로 묶고 그렇게 묶은 팔을 매달은 경우(“팔레스타인식 매달기”)(*Aksoy v. Turkey*, 1996, § 64)
- 청구인이 구금 중 강간을 비롯한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 경우(*Aydin v. Turkey*, 1997, §§ 83-87, 또한 *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2008, § 108에서 청구인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강간과 폭행을 당한 사건 및 *Zontul*

v. Greece, 2012, § 92에서 감독 책임이 있는 해안경비대가 불법이민자를 강간한 사건 참조)

- 구금 중 자백을 끌어내기 위하여 청구인들을 재우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식 매달기”와 “팔라카(falaka, 발바닥을 막대기로 때림)”를 가했으며, 물을 뿌리고 몇 날 며칠을 구타한 경우(*Bati and Others v. Turkey*, 2004, § 110 및 §§ 122-124)
- 단식투쟁을 하던 청구인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수갑과 개구기, 특수 고무관을 사용하여 식도에 음식을 투입하였으며 저항할 경우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Nevmerzhitsky v. Ukraine*, 2005, § 98)
- 청구인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처벌 또는 협박하기 위하여 짜놓은 “특별송환(extraordinary rendering)” 상황에서 수갑 채우기, 두건 씌우기, 강제 탈의,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에서 땅에 엎드리게 하여 강제 좌약 삽입하기 등 여러 행위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경우(*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205)
- 청구인들의 친인척이 경찰관의 무자비한 구타 끝에 사망한 경우(*Satybalova and Others v. Russia*, 2020, § 76, 또한 *Lutsenko and Verbytskyy v. Ukraine*, 2021, §§ 79-80에서 베르비스키(Verbyskyy)가 유로마이단 운동(Maidan protests, 우크라이나 반정부시위) 상황에서 경찰이 고용한 비국가 행위자의 구타로 사망한 사건 참조).

14. 재판소는 국가 관료의 수감자 강간 같은 유형의 행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성과 약화된 저항력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고 혐오스러운 학대의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강간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는 다른 유형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만큼 시간이 지나도 빠르게 나아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또한 강제 삽입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유린되었다고 느끼게 된다(*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2008, § 105).

15. 재판소는 고문이 본질적으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 모두를 수반하므로 고문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신체적 고문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가 정신적 고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 특히 가해진 압박의 심각성과 정신적 고통의 강도를 고려하여, 신체를 고문하겠다는 위협은 심리적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08).

16. 2021년 *Tunikova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비국가 행위자가 가한 학대도 “고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추가적 분류가 청구인들에게 중요할뿐더러 가정 폭력을 대하는 대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받은 대우가 협약 제3조의 범위에 따라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선에 도달하였으므로 추가적 분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77).

2. 비인도적 대우 또는 처벌

17. 고문, 비인도적 대우·처벌과 굴욕적 대우·처벌은 주로 가해지는 고통의 강도 차이에서 발생한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67). 재판소는 특히 대우나 처벌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연달아 수시간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실질적인 신체 손상이나 강렬한 심신의 고통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비인도적”이라고 보았다(*Labita v. Italy* [GC], 2000, § 120; *Kudła v. Poland* [GC], 2000, § 92).

1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우 또는 처벌이 “비인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경찰에 구금된 청구인이 고문 위협을 받은 경우(*Gäfgen v. Germany* [GC], 2010, §§ 91 및 101-108, 또한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 137 및 144에서 청구인이 외국 당국의 손에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사건 및 *Al Nashiri v. Romania*, 2018, § 675에서 이미 학대를 겪어본 청구인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된 가혹한 구류 조건에 처한 사건 참조)
- 청구인들의 주택과 재산을 치안부대가 고의로 파괴하여 청구인들이 생계를 잃고 마을을 떠나야만 한 경우(*Selçuk and Asker v. Turkey*, 1998, § 77; *Hasan İlhan v. Turkey*, 2004, § 108)
- 청구인의 친척이 실종되어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불확실함과 불안을 겪은 경우(*Orhan v. Turkey*, 2002, § 360, 또한 *Musayev and Others v. Russia*, 2007, § 169에서 청구인은 친척과 이웃이 재판도 없이 처형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후 당국의 대응이 불충분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사건 참조)
- 건강에 이상이 있는 청구인이 징집되어 과도한 육체 훈련을 처벌로 받은 경우(*Chember v. Russia*, 2008, § 57)
-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열악한 환경과 매우 구속적인 체계에서 오랫동안 복역하던 경우(*Simeonovi v. Bulgaria* [GC], 2017, § 90)

3.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

19.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지 않거나 해치는 경우 또는 개인의 도덕적, 신체적 저항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포, 고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우는 “굴욕적”이라고 본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또한 대우의 목적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할 것이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고려할 요소이지만,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제3조 위반의 판단을 결정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89;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2004, § 425; *M.S.S. v. Belgium and Greece* [GC], 2011, § 220).

20. 처벌이 “굴욕적이고” 제3조를 위반하려면, 관련된 모욕이나 비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 성격상 상대적이다. 즉 사건의 모든 정황과 특히 해당 처벌 자체의 본질과 맥락, 처벌의 집행 방식과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Tyrer v. the United Kingdom*, 1978, § 30). 어떤 처벌이 범죄 예방이나 범죄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믿거나 또는 실제로 그렇더라도 처벌이 굴욕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의 범죄 예방 효과와 상관없이 제3조에 반하는 처벌에 의지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Tyrer v. the United Kingdom*, 1978, § 31).

2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3조에서 의미하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개념과 “존엄성” 존중의 개념 간에 특별히 강력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Bouyid v. Belgium* [GC], 2015, § 90).

2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우 또는 처벌이 “굴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고, 침대가 너무 딱딱하거나 높아서 욕창이 생길 수도 있으며, 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화장실에 가거나 개인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환경에 갇혀 있는 경우(*Price v. the United Kingdom*, 2001, § 30, 또한 *Vincent v. France*, 2006, §§ 101-103에서 하반신 마비인 청구인이 감방을 나가거나 남의 도움 없이 교도소 내를 이동할 수 없는 사건 참조)
- 교도소 당국이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민 경우(*Yankov v. Bulgaria*, 2003, §§ 120-121, 또한 청구인이 체포된 후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 없이 다섯 달 동안 안경을 압수당한 *Slyusarev v. Russia*, 2010, § 44 사건 참조)

- 당국이 사법부의 보호(placement)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가 판자촌 내 불안정한 환경 속에 생활해야 했던 경우(*Khan v. France*, 2019, §§ 94-95)
- 청구인들의 집을 수색할 때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한 경우(*Ilievi and Ganchevi v. Bulgaria*, 2021, §§ 56-57)
- 청구인에게 사법적 체벌이 가해진 경우(*Tyrer v. United Kingdom*, 1978, § 35)
- 부모의 체포를 목격한 12세 아동이 부모가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상황에 관한 정보를 받도록 당국이 보장하지 못한 경우(*Ioan Pop and Others v. Romania*, 2016, § 65)
- 청구인이 심각할 정도로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기간 구금된 경우(*Kalashnikov v. Russia*, 2002, § 102)
- 청구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알몸 수색을 받은 경우(*Iwańczuk v. Poland*, 2001, § 59, 또한 남성 청구인이 여성 교도관 앞에서 알몸이 되어 교도소 경비가 청구인의 성기와 받은 음식을 장갑 없이 검사한 *Valašinas v. Lithuania*, 2001, § 117 참조)
- 행정 조치가 적용될 때까지 망명 신청자를 경찰서 구내에 3개월 동안 구금하고, 여가 활동이나 적절한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Tabesh v. Greece*, 2009, §§ 38-44, 또한 망명 요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공항 환승 구역 내 장기 체류에 적합하지 않은 불충분한 조건 속에 청구인이 갇혀 있던 *Z.A. and Others v. Russia* [GC], 2019, § 195 및 행정 지연으로 법이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망명 신청자가 몇 달 간 극빈 상태에서 유랑 생활을 한 *N.H. and Others v. France*, 2020, § 184 참조)
- 27인의 LGBTI 활동가가 반대 시위대에 의해 악의적인 언어폭력과 무작위적 신체 공격을 받았으며, 약속되었던 경찰의 보호는 적시에 또는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Women's Initiatives Supporting Group and Others v. Georgia*, 2021 § 60, 또한 TV 인터뷰 이후 LGBTI 커뮤니티 내 이름난 회원이던 청구인이 지속적인 공격적인 동성애 혐오성 캠페인의 표적이 되어 소유 클럽에 방화 공격을 비롯하여 살해 협박을 받고 물리적 폭력과 증오 발언을 당한 *Oganezova v. Armenia*, 2022, § 97 참조)
- 보건 전문가가 유전자 검사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임신한 여성인 청구인이 태아의 건강 상태가 불확실한 상태로 고통스러운 6주를 견딘 후 마침내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임신을 유지할지 합법적인 낙태를 할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였던 경우(*R.R. v. Poland*, 2011, § 159).
- 강제로 추방되던 청구인이 20시간가량 계속 수갑이 채워진 채로 버스를 타야 했던 경우(*Akkad v. Türkiye*, 2022, § 115).

E. 협약 제2조와 제8조의 관계

23.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우가 두 가지 이상의 협약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판소가 주장을 각 조항에 따라(예를 들어,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2006; *D.P. and J.C. v. the United Kingdom*, 2002 참조) 또는 조항을 연계하여(예를 들어 *M.C. v. Bulgaria*, 2003 참조)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재판소가 협약 제2조 또는 제3조의 위반을 판단한 경우, 동일한 주장을 협약 제8조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예를 들어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참조).

24. 원칙적으로, 개인이 국가 대리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 관련자의 주장은 협약 제3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Makaratzis v. Greece* [GC], 2004, § 51; *Ilhan v. Turkey* [GC], 2000, § 76).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와 유형, 상해의 성격 같은 고려사항에 따라, 국가 대리인의 행동이 본질적으로 청구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면 비록 청구인이 생존하더라도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국가 대리인의 강제력 행사가 협약 제2조의 위반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Makaratzis v. Greece* [GC], 2004, § 55; *Soare and Others v. Romania*, 2011, §§ 108-109; *Trévalec v. Belgium*, 2011, §§ 55-61).

25. 비국가 행위자의 치명적일 수도 있었던 공격에서 생존한 청구인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의 강제력 행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취한 것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Yotova v. Bulgaria*, 2012, § 69)

26. 또한 어떤 대우는 제3조에서 금지하는 대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특히 신체와 정신의 완전성 등을 보호하는 제8조를 위배할 수 있다(*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2006, § 43).

27. 예를 들어, 재판소는 협약 제3조의 심각성의 최소기준에는 미치지 않은 대우가 다음과 같은 경우 협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군인들을 조사하고 제대시킨 경우(*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1999, §§ 117-123)
- 청구인이 집 근처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우(*López Ostra v. Spain*, 1994, §§ 58-60)
- 교도관이 교도소 방문자를 알몸 수색할 때 언어적 학대나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정중하지 않았던 경우(*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2006, §§ 44-49)
- 당국이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들개떼가 청구인을 공격한 경우(*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2011, § 45)

II. 국가 대리인이 가하거나 조장하는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협약 제3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A. 전제

28. 체약국은 그 대리인이 직무 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동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문제된 행위를 국가에 전가할 수 있는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해당 행위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협약의 목적상 누가 국가의 대리인인지는 다양한 요소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해당 개인이 공식적으로 공무원이든 아니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기준은 해당 개인의 임명 방식, 감독과 책임성, 과업목표, 권한 및 업무이다(*V.K. v. Russia*, 2017, § 174).

29. 위와 관련하여, 체약국 당국이 관할권 내 타인의 협약상 권리를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2019, § 127).

B. 증거 평가

30. 협약 제3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재판소는 증거 평가 시 검증에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내 소송이 진행된 경우,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사실 판단을 재판소의 판단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국내 법원에 제시된 증거는 보통 국내 법원이 평가한다. 재판소는 제3조 사건이라면 국내 법원의 결론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설득력 있는 요소가 있어야만 국내 법원이 도달한 사실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Cestaro v. Italy*, 2015, § 164 및 인용판례 참조).

31. 사건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재판소는 사실관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1심 법원이 겪는 것과 동일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협약 제19조에 따라 협약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약국의 약속 준수를 보장해야 하는 재판소의 임무를 준수하려면 재판소가 증거와 증명 사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51).

1. 증명 기준

32. 제3조에 반하는 대우에 대한 주장은 적절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증거를 평가할 때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증명기준을 적용하지만,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추론이나 이와 유사하게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추정을 통해 이러한 증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부언한다(*Salman v. Turkey* [GC], 2000, § 100; *Bouyid v. Belgium* [GC], 2015, § 82)

2. 증명 책임

33.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득의 수준과 이와 관련된 증명 책임의 분배는 사안의 특수성, 제기된 혐의의 성격,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깊이 연관된다(*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51).

34. 협약 절차가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원칙(*affirmanti incumbit probatio*)을 모든 경우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Blokhin v. Russia* [GC], 2016, § 140). 구금된 사람의 경우와 같이 오직 당국만이 문제된 사건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구금 중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강력한 사실의 추정이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증명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피해자의 사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해명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Salman v. Turkey* [GC], 2000, § 100). 그러한 해명이 없는 경우, 재판소는 국가에 불리한 추론을 내릴 수 있다(*Bouyid v. Belgium* [GC], 2015, § 83).

35. 상기 원칙은 개인이 경찰이나 그와 유사한 당국의 통제를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Bouyid v. Belgium* [GC], 2015, § 84).

C. 국가 대리인의 강제력 행사

1. 일반적 고려사항

36.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떤 개인이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좀 더 일반적으로 법 집행관과 마주하는 경우, 개인의 행위에 엄밀히 필요하지 않은 물리적 힘의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감소시키며 원칙적으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원칙적으로”라고 하여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침해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간섭은 협약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법 집행관 간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감소시킨다면 협약 제3조의 침해가 된다. 특히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해 법 집행관이 물리적인 힘을 엄밀하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면 해당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침해로 본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00-101).

37. 또한 재판소는 체포와 같은 특히 제한된 상황에서의 국가 대리인의 강제력 행사는 제3조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그러한 강제력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과도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한다(*Necdet Bulut v. Turkey*, 2007, § 23;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2021, § 359).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관계인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하거나 상해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Mafalani v. Croatia*, 2015, § 120 및 인용판례 참조).

38.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이 무장하지 않았으며 비록 경찰관 중 한 명을 때리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소극적인 상태이다가 바닥으로 눌러 엎드리게 된 사실을 감안하면 경찰이 신원확인 과정에서 청구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Dembele v. Switzerland*, 2013, § 47 및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려 했던 *A.P. v. Slovakia*, 2020, § 62 사건 참조).

39. 이에 반해 재판소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폭행한 청구인(보디빌더)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청구인들의 행위 성격상 필요했다고 판단하였다(*Berliński v. Poland*, 2002, § 62 및 청구인이 경찰관을 방해하다가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Barta v. Hungary*, 2007, § 72 사건과, 술 취한 상태였던 청구인들이 사유 재산 훼손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P.M. and F.F. v. France*, 2021, § 88 사건 참조).

40. 또한 체포, 수색, 물품 압수 등 정당한 목적과 범죄 기소의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찰의 작전 상황에서, 재판소는 체포 현장에서 가족, 특히 어린 나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판결한 바 있다(*Gutsanovi v. Bulgaria*, 2013, § 132). *Gutsanovi v. Bulgaria*, 2013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경찰이 이른 새벽에 작전을 수행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한 특수 요원이 동원되어 아버지의 체포를 목격 한 자녀들이 겪은 공포와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으며, 이들이 받은 대우는 심각성의 기준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였다(§ 134 또한 9세의 딸이 저항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한 *A v. Russia*, 2019, § 67 사건과 이와 대조적으로 집안에서 온 가족이 친척의 체포를 목격하였지만 모두가 성인이었던 *Ilievi and Ganchevi v. Bulgaria*, 2021, § 60 참조).

41. 구금이라는 특정 상황에서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는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해설서를, 대중 집회 및 시위의 상황에서는 대중 시위에 관한 판례 해설서를 참조하라.

2. 특정 구속 도구 또는 수단 사용

42. 수갑과 같은 구속 수단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체포나 구금과 관련하여 부과된 조치이며,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강제력 행사 또는 공개 노출을 수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협약 제3조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Shlykov and Others v. Russia*, 2021, § 72). 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상황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며 구속 도구의 사용이 필요했는지 검토한다(*Pranjić-M-Luk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20, § 72).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관계인이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려 한다거나 상해나 피해를 초래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2014, § 117 및 인용판례 참조).

43. 특히 재판소는 교도소 외부로 이송하거나, 단시간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행동에 근거한 개인 위험 평가와 관련된 개별적이고 주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조치에 해당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라면 수갑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Shlykov and Others v. Russia*, 2021, § 73). 이러한 상황에서 심각성의 수준을 평가할 때, 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형량의 중대성, 범죄기록 및 폭력전과, 해당 조치의 국내법 준수, 개인의 행위에 대한 조치의 비례성, 구금의 적법성, 대우의 공공성, 건강에 미치는 중대성, 청구인의 건강상태, 기타 적용된 보안조치, 수갑이 채워진 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한다(*Shlykov and Others v. Russia*, 2021, § 73 및 인용판례 참조).

44. 법 집행에서 후추 스프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PT)의 권고를 지지하였다. CPT에 따르면 후추 스프레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질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 명확하게 제한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Tali v. Estonia*, 2014, § 78). 특히, 이미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İzci v. Turkey*, 2013, §§ 40-41; *Ali Güneş v. Turkey*, 2012, §§ 39-40).

45.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특히 접촉시켰을 때 강한 통증과 일시적인 무력화를 유발하는 전기충격 무기의 사용에 대한 CPT의 강한 유보 입장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무기의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은 법 집행관이라면 통제 대상이 접촉할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통제기술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Anzhelo Georgiev and Others v. Bulgaria*, 2014 §§ 75-76).

46. 재판 중 사람을 금속 철창에 감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민주사회의 특징인 문명화된 행동의 기준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성격인 바, 그 자체로 협약 제3조에 위반되는 인간 존엄성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2014, § 138, 또한 *Karachentsev v. Russia*, 2018, § 53에서 청구인이 교도소 내 금속 철창에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재판에 참여한 사건 참조). 이에 반해 피고인을 유리 칸막이 뒤나 유리 감방에 배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할 정도로 모욕적인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리 칸막이나 유리 감방에 감금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금에 내재된 불가피한 고통의 수준을 초과하는 강도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Yaroslav Belousov v. Russia*, 2016, § 125).

47. 구금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기술 및 다른 기술의 사용은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해설서(Case-Law Guide on Prisoners' Rights)*를 참조한다.

D. 알몸 수색 또는 은밀한 신체 수색

48. 체포 중에 수행되는 알몸 수색이나 은밀한 신체 수색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경우 제3조에 부합한다(*Wieser v. Austria*, 2007, § 39, 또한 구금과 관련된 *Roth v. Germany*, 2020, § 65 및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Prisoners' Rights)* 참조).

E. 군 복무

49. 의무적인 군 복무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모욕의 요소를 수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감자와 관련하여 굴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많은 행위는 예를 들어 전장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일부라는 점에서 군대의 특정 임무에 기여하는 경우, (*Chember v. Russia*, 2008, § 49) 군대 내에서 발생하여도 학대의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개인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군사 훈련의 절차와 방법이 군 기강에 내재된 불가피한 수준의 어려움을 초과하는 강도로 괴롭거나 고통스럽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복무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의료를 지원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Chember v. Russia*, 2008, § 50).

51.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는 신체 훈련이 군사 훈련의 일부일 수 있지만, 협약 제3조와 양립하려면 징집병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에 빠뜨리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소는 강조하였다(*Chember v. Russia*, 2008, § 51).

52. 예를 들어, 재판소는 무릎이 불편한 남성에게 막사를 철저히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0회의 무릎 굽히기로 처벌한 것에 대해 제3조의 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Chember v. Russia*, 2008, §§ 52-57). 마찬가지로, 71세의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훨씬 나이 어린 신병에게 맞춰진 훈련에 참여하게 된 *Taştan v. Turkey*, 2008의 사건도 제3조가 위반된 사건이다(§ 31). 재판소는 탈영을 시도한 징집병을 군용 짧은 속옷 하의만 입힌 채 대대 앞에 세운 *Lyalyakin v. Russia*, 2015의 사건도 제3조 위반으로 보았다(§§ 72-79).

F. 구금 조건

53. 구금이 특히 협약 제3조에 해당하려면, 관련된 고통과 모욕이 자유의 박탈 자체와 관련된 고통과 모욕의 불가피한 요소를 넘어야 한다. 즉, 당국은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구금되고 구금형 또는 기타 유형의 구금 조치의 집행 방식과 방법이 구금에 내재된 불가피한 수준의 고통을 초과하는 강도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며, 구금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고려할 때 관계인의 건강과 복지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2015, § 227; *Muršić v. Croatia* [GC], 2016, § 99).

54. 구금 조건을 평가할 때, 청구인이 제기한 구체적인 혐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이 누적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 구금된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Ananyev and Others v. Russia*, 2012, § 142; *Idalov v. Russia* [GC], 2012, § 94; *Muršić v. Croatia* [GC], 2016, § 101).

55.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Prisoners' Rights)*를 참조하라.

G. 구금 중 의학 치료

56. 제3조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신체적 행복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Blokhin v. Russia* [GC], 2016, § 136; *Mozer v. Moldova and Russia* [GC], § 178).

57. 이와 관련하여 구금된 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고 특정한 형태의 치료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의료 지원이 충분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또한 당국은 구금된 자의 건강상태와 구금 중 치료에 관한 종합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진단과 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질병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감독하며, 대중 치료보다는 구금자의 건강문제를 적절히 살피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치료전략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처방된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실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교도소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치료는 적절한 수준, 즉 국가 당국이 국민 전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감자가 구금 시설 외부의 최고 의료시설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금된 장소에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구금된 자를 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Rooman v. Belgium* [GC], 2019, §§ 147-148).

58.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Prisoners' Rights)*를 참조하라.

H. 피해자의 친인척이 겪는 고통

1. 전제

59. 판례법을 살펴보면 재판소는 피해자의 가족이 청구인인 경우 가족이 받는 중대한 심리적 영향을 항상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의 위반이 별도로 인정되려면 앞서 언급한 위반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괴로움과 고통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특수한 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77).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주로 실종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실종 사건에서 제시된 원칙을 실종 상황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2019, § 227).

2. 실종자의 친인척

60. 실종의 현상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모른 채 불확실성의 고뇌에 시달리는 실종자의 친인척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따라서 재판소의 판례는 실종자의 친인척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3조에 위배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식하였다. 인권 침해의 본질은 실종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알려졌을 때 당국이 보인 반응과 태도에 있는 것이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200).

61. 기타 관련 요인으로는 가족 관계의 근접성, 관계의 특수한 상황, 가족이 문제의 사건을 목격한 정도, 실종자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에 가족이 관여한 정도 등이 있다. 이러한 위반의 판결은 피청구국 실종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국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친인척이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하는 가운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문제로 인해 실종자의 행방과 운명에 대한 설명 의무를 명백하고 지속적이며 냉담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한다(*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2009, § 200;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78).

62. 예를 들어 *Orhan v. Turkey*, 2002 사건에서 청구인은 장남과 두 형제의 실종으로 인하여 제3조의 위반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아들과 형제가 군인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였으며 실종된 지 거의 8년이 지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수많은 문의와 청원을 청구인 자신이 수행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어지는 조사 결과도 통보받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자신의 집과 마을에서의 안전함을 상실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모든 요인을 바탕으로 재판소는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겪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제3조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대우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신적 괴로움과 고뇌를 겪었다고 판단하였다(§§ 359-360, 또한 *Imakayeva v. Russia*, 2006, § 165에서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직접 나서거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절차를 밟아 실종된 친인척의 운명을 밝힐 수 있는 범죄수사 문서에 대한 접근을 당국이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강조한 사건과 *Enzile Özdemir v. Turkey*, 2008, §§ 64-65에서 재판소가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구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식 도장의 존재를 강조하여 청구인에게 실종된 남편의 행방을 재차 확인시켰으나 이후 당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부인한 사건 참조).

63. 이에 반해 재판소는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실종된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남편이 실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3조의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Nesibe Haran v. Turkey*, 2005, §§ 83-84, 또한 재판소가 수사 당국의 행위가 과실은 있으나 협약 제3조에서 요구하는 심각성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납득하지 못한 *Kagirov v. Russia*, 2015, § 113 사건 참조).

3. 사망이 확인된 경우

64. 비교적 짧은 기간 행방이 묘연하였다가 구금 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의 경우 재판소의 접근방식은 보다 제한적이다. 청구인들이 친인척의 살해를 목격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일련의 체첸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미 실제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협약 제2조의 위반사실을 판단했기 때문에 제3조 위반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판소는 당국이 개인을 살해하여 제2조를 위반한 사건에서 해당 사망을 야기한 사건의 즉각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3조를 친인척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청구인이 가족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확인된 사망 사건일 경우에만 제3조의 위반이 별도로 인정되었다(*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2013, §§ 179-181 및 인용판례 참조).

4. 시신의 대우

65. 재판소는 사망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학대의 금지가 시신에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Akpınar and Altun v. Turkey*, 2007, § 82). 그러나 사망자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시신의 대우로 인해 제3조 위반이 발생한다(§§ 84-87).

66. *Khadzhaliyev and Others v. Russia*,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해의 일부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사지가 잘리고 참수된 자녀의 시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매장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3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121). *Akkum v. Turkey*, 2005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훼손된 시신을 수취한 사건도 제3조를 위반하였다(§ 259). *Elberte v. Latvia*,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알리지도 않고 국내법을 위반함에도 청구인의 사망한 남편의 신체조직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제3조의 위반을 판결하였다(§ 143).

67. *Cangöz and Others v. Turkey*, 2016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친인척이 병사에게 살해된 후 그 시신이 군 기지로 이송된 사건은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시신은 병사들이 볼 수 있는 야외에 두었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검사와 두 명의 의사가 검시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시신을 직접 본 사실과 무관하게 친인척의 시신이 검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히 대우의 목적(시신 검시)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고통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친 사망자의 가족에게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정신적 괴로움과 그 차원이나 특성에서 다르지 않다(*Cangöz and Others v. Turkey*, 2016, §§ 157-168).

5. 기타

68.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2006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망명 신청자가 구금 및 추방된 사건이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의 행위를 참작하여, 최초 청구인인 구금된 5세 아동의 어머니가 딸의 구금으로 극심한 괴로움과 불안감을 겪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정황을 고려할 때 제3조를 위반할 정도로 심각성의 기준에 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55-59). 반면 재판소는 어머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채 하루를 경찰서에서 보낸 8세 아동의 어머니가 느낀 불안감은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Tarak and Depe v. Turkey*, 2019, § 79).

69. 청구인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에이즈로 사망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아들의 상황에 관심을 얻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한 점, 아들의 사망 전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당국이 청구인의 호소에 보여준 냉소적이고 무관심하며 잔인한 태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비인도적인 대우의 희생자라고 판결하였다(*Salakhov and Islyamova v. Ukraine*, 2013, § 204).

70.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추정되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당국의 부적절한 반응이나 태도에 대한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 내용에서 이 부분을 기각하였다(*M.P. and Others v. Bulgaria*, 2011, §§ 123-125).

I. 유죄판결 및 양형

1. 형사 책임의 연령

71. *V. v. the United Kingdom*, 1999 및 *T. v. The United Kingdom*, 199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10세에 저지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귀속이 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당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 사이에는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에 대한 명확한 공통 기준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형사 책임 연령을 낮게 규정하는 유럽 관할권 내 몇 안 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10세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따르는 연령 제한에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어린 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형사 책임이 귀속되는 것 자체로 협약 제3조가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V.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 72-74; *T. v. The United Kingdom* [GC], 1999, §§ 70-72).

2. 과도하게 비례성을 상실한 선고

72. 재판소는 적절한 양형 문제는 원칙적으로 협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비례성을 상실한 양형은 선고된 시점에서 제3조에 반하는 확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과도한 비례성 상실(gross disproportionality)”은 엄격한 심사기준이며, 이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는 드물고 독특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Babar Ahma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12, § 237; *Harkins and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2012, § 133).

73.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이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최소 양형 요건이 없었던 사건에서 청구인의 인도가 협약 제3조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는다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테러 범죄를 포함한 범죄 혐의의 성격과 형량이 과도하게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준선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의 인도가 부과된 높은 형량으로 인해 협약 제3조에 반하는 대우를 받는다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Aswat v. UK*, 2013, § 58).

74. 청구인들이 수형자 이송 협정에 따라 태국 법원이 선고한 장기형이 영국에서 계속 집행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형자 이송 협정에 따라 형이 계속 집행되는 상황에서 해당 형이 제3조를 위반하는지 검토할 때, 관련된 고통이나 모욕이 외국 법원에서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관련된 불가피한 고통과 모욕의 요소를 넘는지 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통과 모욕의 정도를 평가할 때, 국가별로 채택한 다양한 양형 관행과 적절한 형량에 대한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차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재판소는 이송이 사법행정 에 관한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협력 조치가 해외 형사제재 대상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 형 집행 방식과 방법이 구금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초월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청구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해당 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청구인이 누리는 혜택이다(*Willcox and Hurford v. the United Kingdom*, 2013, § 76).

3. 사형

75.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회원국 중 두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는 제13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서명 국가 중 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를 비준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사형 유예를 준수하는 국가의 일관된 관행과 더불어 제2조가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판소는 앞서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1989, §§ 102-104 사건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제2조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이 제3조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라는 문구를 사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 120). 따라서 사형은 제6의정서 및 제13의정서로 개정된 제2조에 따라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제3조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하는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처벌이 되었다(*A.L. (X.W.) v. Russia*, 2015, § 64).

76. 협약 제3조는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의 인도, 추방 또는 기타 이송을 금지한다(*Al-*

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2010, §§ 123 및 140-143; *A.L. (X.W.) v. Russia*, 2015, §§ 63-66;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2005, § 333).

77. 자세한 내용은 *이민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Immigration)*를 참조하라.

4. 종신형

78. 이 협약은 살인처럼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조와 양립하려면 종신형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감형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수감자의 석방 전망 및 검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토의 근거는 수감자를 계속 감금할 수 있는 정당한 형법적 근거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범죄의 처벌, 억제, 사회방위, 교화가 포함된다. 이들 근거가 이루고 있는 균형 상태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며 형의 집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처음 구금을 정당하게 한 근거가 장기간의 형을 살고 난 후에는 근거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교화의 근거,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사회적 복귀는 체약국의 관행,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관련 기준 및 관련 국제 자료에 반영된 바와 같이 현재 유럽 형벌 정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Murray v. the Netherlands* [GC], 2016, § 102; *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17, § 42).

79. 종신형은 단지 사실상 완전 복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Murray v. The Netherlands* [GC], 2016 § 99 및 추가 참조자료).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교도소 당국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Murray v. the Netherlands* [GC], 2016, § 104). 따라서, 수감자가 얼마나 교화되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형벌학적으로 정당한 근거 하에 더 이상 구금이 정당하지 않을 정도로 교화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즉, 동정적 사유만을 근거로 한 검토는 불충분하다(*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17, § 43).

80. 이러한 검토와 관련된 국내법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은 충분한 정도로 명확하고 확실해야 하며, 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반영해야 한다. 즉,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처음부터 석방의 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제 형량 재검토가 진행되거나 요청될 수 있는지도 포함된다(*Vinter and Others*, 2013, § 12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늦어도 형 집행 후 25년 이내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관련 비교 자료와 국제 자료에 따른 명확한 근거에 주목하였다(*ibid.*, §§ 68, 118, 119 및 120). 그러나 재판소는 이것이 형사사법 및 양형의 사안에서 체약국에 부여되어야 하는 재량에 속한 문제라는 점도 밝혔다(*ibid.*, §§ 104, 105 및 120).

81. 이러한 검토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체약국에 부여되어야 하는 재량을 고려하여 사법적 검토인지 행정적 검토인지 규정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Vinter and Others*, 2013, § 120). 따라서 형량 재검토의 수행 주체가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는 체약국별로 결정할 사항이다(*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GC], 2017, § 44).

82. 범죄인 인도의 상황에서, 제 3 국에서 부과된 종신형이 협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체약국의 종신형 수감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준을 참조하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상황과 관련된, *Vinter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에서의 절차적 보장은 범죄인 인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소는 대신 두 단계로 구성된 적응형 접근법을 적용한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범죄인 인도 및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청구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두번째 단계에서는 제 3 국이 선고 이후부터 수형자의 행동 기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재할과정이나 석방근거를 고려할 수 있는 검토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Sanchez-Sanchez v. the United Kingdom*, §§ 83-97).

83.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의 권리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Prisoners' Rights\)](#)를 참조하라.

J. 인도 및 추방

84. 재판소는 체약국이 확립된 국제법의 문제로서 협약을 포함한 조약상 의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거주, 추방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Khasanov and Rakhmanov v. Russia* [GC], 2022, § 93). 정치적 망명권은 협약이나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추방, 인도 또는 기타 외국인을 내보내기 위한 조치는 제3조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내보낼 경우 수용국에서 제3조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는다는 실질적인 위협에 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협약에 따른 체약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조는 해당 개인을 해당 국가로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암시하고 있다(*Ilias and Ahmed v. Hungary* [GC], 2019, §§ 125-126).

85. 자세한 내용은 [이민에 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Immigration\)](#)를 참조하라.

K. 강제 의료 개입

a. 일반 원칙

86. 확립된 의학 원칙의 관점에서 치료에 필요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의학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증명되었고, 해당 결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존재하고 준수되었음을 확신해야 한다(*Jalloh v. Germany* [GC], 2006, § 69).

b. 강제 음식물 투여

87. 의식적으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수감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 음식물 투여는 원칙적으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라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판소는 의학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증명되었고, 강제 음식물 투여 결정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존재하고 준수되었음을 확신해야 한다(*Ciorap v. Moldova*, 2007, § 77). 또한, 단식 투쟁에 나선 청구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투여하는 방식은 협약 제3조에 따라 재판소의 판례가 예상하는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따른 기준선을 초월하지 않아야 한다(*Nevmerzhitsky v. Ukraine*, 2005, § 94).

88. 그 중에서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정신과 환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투여하는 등의 대우를 한 *Herczegfalvy v. Austria*, 1992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러한 대우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므로 제3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79-84). 89. 이에 반해 재판소는 수감 환경에 저항하여 단식 투쟁하던 수감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인 것은 정당한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저항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에 고통을 주고 모욕하는 방식으로 행해졌으므로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Ciorap v. Moldova*, 2007, § 89, 또한 *Nevmerzhitsky v. Ukraine*, 2005, § 98 참조).

90. 최근 재판소는 단식 투쟁이 시작된 직후에 이루어진 강제 음식물 투여에 대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하고 법적 규율 및 집행상의 절차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소로서는 문제가 된 강제 음식물 투여의 목적이 해당 교도소 내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Yakovlyev v. Ukraine*, 2022, §§ 46-51).

c. 강제 정신과 치료

91. *Gorobet v. Moldov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병원에 41일간 감금되어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없으며, 그러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치료가 청구인에게 공포, 고뇌 또는 열등감을 불러일으켜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2).

92. 마찬가지로 *Bataliny v. Russia*,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살을 시도했던) 청구인에 대한 최초의 비자발적 입원은 정당했지만, 청구인의 감금 및 신약에 대한 과학적 연구 참여를 포함한 지속적인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88-91).

93. 이에 반해 *Naoumenko v. Ukraine*, 2004, §§ 113-11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수감 치료가 비록 강제적이었던더라도 제3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다(또한 청구인이 본인의 완전한 동의 없이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히 성 관련 치료 등에 항의한 *Dvořáček v. the Czech Republic*, 2014, § 106 참조).

d. 비자발적 불임시술

94. 재판소는 불임시술이 사람의 재생산 관련 건강상태를 중대하게 방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불임시술은 피임 방법이나 의학적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증명된 치료 목적 등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능력이 없는 성인 환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의학 처치를 시행하는 것은 협약의 기초가 되는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존중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V.C. v. Slovakia*, 2011, §§ 106-107).

95. 로마족인 청구인이 제왕절개로 출산한 직후 사전 동의 없이 불임술을 받은 *V.C. v. Slovaki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료진이 청구인을 학대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징후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총체적으로 무시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우는 협약 제3조의 위반한 행위였다(§§ 106-120, 또한 재판소가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받은 불임시술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학적 개입이 아니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한 *N.B. v. Slovakia*, 2012 사건 참조). 이러한 절차는 청구인이 가진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요건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74-81).

96. *G.M. and Others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2 사건에서 청구인(정신병원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 여성)은 의사에 의한 강간 피해자였고 합의되지 않은 낙태 및 불임시술의 대상이 되었는데, 재판소는 법제도와 UN 및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라 강제 낙태, 불임시술, 피임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한 형태라고 판결하였다(§ 88). 특히 문제되는 법제도의 틀에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의료 개입에 대한 실효적이고 무료이며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요건에 관한 보호장치, 일반 지적장애인 특히 여성에게 합의되지 않은 의료 개입이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형사적 입법, 특히 여성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28).

97. 의료기준을 위반하고 취약한 청년의 의사에 반하여 공립병원에서 낙태가 행해진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고려할 때(*S.F.K. v. Russia*, 2022, § 81) 해당 치료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며, 심각한 형태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라고 판결했다.

e. 사람의 신체에서 약물 및 기타 증거물 제거

98. 재판소는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동기가 아니어도, 협약 제3조는 피의자로부터 범죄행위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료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적 의료 개입은 해당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정당화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절차가 혐의가 있는 범죄의 실제 증거를 개인의 신체 내부에서 확보하려는 경우 이러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해당 행위의 침해적인 성격으로 인해 모든 주변상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국은 증거를 회수하기 위한 다른 대안도 고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절차는 용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Jalloh v. Germany* [GC], 2006, §§ 70-71).

99. 또한 치료 목적으로 수행되는 개입과 마찬가지로, 신체에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하여 강제로 의료 시술을 받는 방식은 협약 제3조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가 규정하는 심각성의 최소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적 의료 개입의 결과로 관계인이 심각한 신체 통증이나 고통을 겪었는지, 강제적 의료 절차를 의사가 명령하고 집행하였는지, 관계인이 지속적인 의료 감독을 받았는지, 강제적 의료 개입이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건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포함된다(*Jalloh v. Germany* [GC], 2006, §§ 72-74).

10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이 교통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서에서 소변 표본을 채취할 때 강제로 도뇨관 삽입을 한 경우, 청구인이 제3조를 위반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의 혈액 표본을 채취하여 동일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방식이 청구인에게 육체적 통증과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사실에 주목하였다(*R.S. v. Hungary*, 2019, § 72 및 이와 대조되는 *Schmidt v. Germany* (dec.), 2006 사건에서는 범죄 가담을 증명하기 위하여 용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혈액과 타액 표본을 채취하는 것이 제3조에서 요구하는 심각성의 최소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III.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협약 제3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A.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범위

101. 협약에 따라 사인(私人)의 행위(*Beganović v. Croatia*, 2009, § 68) 또는 사인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국가 대리인의 행위(*Çevik v. Turkey*, (no.2), 2010, § 33)에 대하여 체약국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소는 협약 제1조가 부과하는 의무를 통하여 국가의 책임이 관련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0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1조에 따른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의 관할권 내 모든 사람에게 협약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제3조와 함께 고려할 때, 국가가 관할권

내 사인이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73; *O’Keeffe v. Ireland* [GC], 2014, § 144).

103. 특히 아동 및 기타 취약한 개인은 실효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77 및 *R.B. v. Estonia*, 2021, § 78).

104. 이와 관련하여, 제3조는 구금된 자 또는 징집된 군인 등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취약한 지위에 처한 사람의 신체적 복지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고 재판소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Premininny v. Russia*, 2011, § 73).

105.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에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검토하였다.

- 아동학대의 경우(예를 들어, *A. v. the United Kingdom*, 1998;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1;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2020 참조)
- 가정폭력의 경우(예를 들어 *T.M. and C.M. v. the Republic of Moldova*, 2014; *Talpis v. Italy*, 2017; *Volodina v. Russia*, 2019; 사이버폭력은 *Buturugă v. Romania*, 2020, §§ 74, 78-79 참조)
- 성범죄의 경우(예를 들어 *M.C. v. Bulgaria*, 2003; 미성년자 관련은 *I.C. v. Romania*, 2016; *M.G.C. v. Romania*, 2016 참조)
- 수감자 간 다툼의 경우(예를 들어 *Pantea v. Romania*, 2003; *Rod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08; *D.F. v. Latvia*, 2013 참조)
- 시위의 경우(예를 들어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2015, §§ 72-74, § 81; *Women’s Initiatives Supporting Group and Others v. Georgia*, 2021, §§ 70-78 참조)
- 신체적, 언어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경우(*Dorđević v. Croatia*, 2012 참조)
- 신체적, 언어적으로 미성년자 또는 노인을 괴롭히는 경우(*V.K. v. Russia*, 2017 참조 또는 *Irina Smirnova v. Ukraine*, 2016 참조)
- 혐오에 근거하여 폭력을 가하는 경우(예를 들어 *Škorjanec v. Croatia*, 2017; *Burlya and Others v. Ukraine*, 2018 참조)
- 군대 내 괴롭힘 및 따돌림의 경우(예를 들어 *Filippovy v. Russia*, 2022 참조)

B.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본질

106. 협약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실제적인 적극적 의무는 첫째, 보호의 입법 및 규제 체계를 마련할 의무, 둘째, 적합하게 제한된 일정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에 반하는 대우의 위험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조치를 취할 의무로 구성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78).

1. 적절한 입법 및 규제 체계를 수립할 의무

107. 협약 제3조에 의거한 적극적 의무를 위해, 특히 가장 심각한 경우 형법의 조항을 제정하고 실제로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입법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79). 108. 이러한 의무는 특히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공 서비스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아동이 현저하게 취약한 상태에서 당국의 배타적 통제를 받는 경우에 특별히 중요하다. 특별조치와 안전장치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특히 가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를 파악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관련 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하였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0).

109.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의무를 위해 일반적으로 국내 당국이 형법적 보호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설득력 있는 제재를 제시하여 가정 내 폭력행위를 범죄화하는 것도 이러한 조치에 포함된다(*Volodina v. Russia*, 2019, § 78). 또한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국내법 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운영적 조치가 담긴 일종의 도구상자(toolbox)를 통해 관련 당국이 특정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충분하고 평가받은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선택할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판소는 요구한다(*Tunik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95).

2. 예방적 운영 조치를 취할 의무

110. 협약 제2조와 마찬가지로 제3조는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학대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1).

111. 이러한 적극적 보호 의무는 특히 인간 행위의 예측 불가능성 및 우선순위와 자원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운영상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협약의 요건이 당국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는 최소한 아동 및 기타 취약한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당국이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O’Keefe v. Ireland* [GC], 2014, § 144). 112. 따라서 적극적 의무가 발생하려면, 당국이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식별된 개인에게 실질적, 즉각적인 학대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가 권한 범위에 속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3).

113.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평가는 위험이 존재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적 운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의무 준수에 대한 검토에는, 국내 당국이 수행한 위험 평가의 충분성 및 조치 의무를 유발하는 관련 위험이 확인되었는지 또는 확인되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취해진 예방적 조치의 충분성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협약 제2조에 따르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Kurt v. Austria* [GC], 2021, § 159 참조).

114. 또한 재판소는 국가의 부작위가 “아니었더라면”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질적으로 결과를 변경하거나 피해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으로 활용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O’Keefe v. Ireland* [GC], 2014, § 149).

C. 실제 사례

115.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학대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구금관리국이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를 계획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Preminy v. Russia*, 2011, § 90, 또한 *I.E.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0, § 46에서 정신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 폭력 범죄자들과 같은 감방에 배치되어 구타와 강간을 당한 사건 참조)

- 국내법 체계가 가정폭력을 별도의 범죄 또는 다른 범죄의 가중요소로 규정하지 않았고, 공소 제기에 필요한 상해의 경중을 판단하는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당국이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운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Volodina v. Russia*, 2019, § 85 및 § 91, 또한 *M.C. v. Bulgaria*, 2003, § 166에서 국내규제체계가 강간혐의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사건 참조)
- 당국이 취약한 소수 종교 구성원이 계획적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한 경우(*Milanović v. Serbia*, 2010, § 90, 또한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100-105, § 124에서 정교회 신자가 여호와의 증인이 만나는 경우 지속적으로 공격하는데도 경찰이 폭력을 중지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초기 단계에서 경고를 받았으나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참조)
- 군 당국이 군대 내 따돌림과 괴롭힘의 피해자이자 고발자인 청구인들의 아들을 동료 징집병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경우(*Filippovy v. Russia*, 2022, § 103).

116. 이에 반해 고아원에서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3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엇보다 시설 내 아동 성범죄에 관한 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체계가 시행된 방식으로 제3조 위반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불가리아 당국이 청구인들이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발생할 정도로 이러한 위협을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IV.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의무

협약 제3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A. 절차적 의무의 범위

117. 개인이 국가 대리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제3조를 침해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이] 협약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 제1조에 따른 국가의 일반 의무와 함께 해석하면, 이 조항은 효과적인 공식적 조사가 있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Assenov and Others v. Bulgaria*, 1998, § 102;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82). 그렇지 않으면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을 것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국가의 대리인이 사실상 면책권을 가지고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Labita v. Italy* [GC], 2000, § 131).

118. 위 사실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3조의 기준을 준수하여 경찰 또는 기타 유사한 국가 대리인이 직접 저지른 심각한 학대 혐의를 조사할 때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법치

준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공모하거나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Lyapin v. Russia*, 2014, § 139).¹¹⁹ 또한 이러한 절차적 의무는 사인(私人)이 저지른 학대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할 요건까지 확장된다(*M. and Others v. Italy and Bulgaria*, 2012, § 100; *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4).

B. 조사 목적

120.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국가 대리인이나 기관이 관련된 사건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그들의 책임 하에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17).

C. 검증의 본질 및 정도

121. 조사의 효과를 판단하는 최소기준선을 충족하는 검증의 본질과 정도는 특정 사건의 정황에 달려있다. 관련된 모든 사실에 근거하고 조사 업무의 실제 현실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90).

122. 예를 들어, 아동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 제3조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려면 국내 절차에서 아동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이 특히 취약한 부분과 그에 따른 필요를 충분히 해결되도록 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이 요구된다(*B v. Russia*, 2023, § 54). 특히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는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 보다 구체적으로 성착취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란사로테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92).

123. 마찬가지로, 근친상간(강간) 피해자가 학대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재판소는 당국이 피해자의 성별, 인종,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의 특별한 취약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의 실현은 물론 가해, 보복 및 반복적인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형사 고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I. v. Croatia*, 2023, § 97).

D. 조사 기준

1. 전제

124. *S.M. v. Croatia*, [GC], 2020, §§ 311-3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수렴(converging) 원칙에 따라 절차적 의무에 관한 판례를 요약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국가의 적극적 의무의 일반적인 범위는 협약에 반하는 대우가 국가 대리인의 개입을 통해 가해진 경우와 사인이 폭력을 가한 경우 사이에서 다를 수 있지만, 절차적 요건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Sabalić v. Croatia*, 2021, § 96).

125. 특히 당국은 공식적 이의가 제기되는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명백한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고문이나 학대가 발생한 가능성을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당국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2007, § 97).

126. 제3조에 따른 절차적 의무는 무력 충돌 상황을 포함하여 어려운 안보 상황에서도 계속 적용된다. 조사 의무를 유발하는 사건이 보편화된 폭력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조사관은 덜 효과적인 조사 조치의 활용을 강제하거나 또는 조사 지연을 유발하는 장애와 제약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제3조에 따라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유지된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319).

127. 마지막으로, 제3조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매개변수는 제2조의 요건에 수렴하며, 평가는 조사 조치의 충분성, 조사의 신속성, 피해자의 조사 참여, 조사의 독립성 등 몇 가지 필수적인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취급되면 그 자체로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여러 요소들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R.R. and R.D. v. Slovakia*, 2020, § 178, 또한 제2조와 관련하여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2015, § 225 참조).

2. 독립성

128. 조사가 효과적이 되려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담당자가 조사 대상과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계적이거나 제도적으로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18).

129. 이와 관련하여 적용될 요건은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조사의 전반적인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당 요건은 조사를 담당하는 개인과 기관이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과 조직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독립적이어야 충분한지는 각 사건에 구체적인 모든 정황에 비추어 평가하여야 한다(*M.B. and Others v. Slovakia*, 2021, § 91).

130. 재판부는 문제가 된 조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관이 피고인(그중 2명은 장군)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위계질서 내에서 종속 관계에 있는 장교인 군 검사인 경우(*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333)
- 수사를 수행한 검사도 청구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형사 기소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구금 재개를 신청한 경우(*Boicenco v. Moldova*, 2006, § 124)
- 수사당국이 수사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학대 혐의가 있는 가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임한 당국은 그 대리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기관이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문제의 경찰관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에 의존한 경우(*Najafli v. Azerbaijan*, 2012, §§ 52-54, 또한 *Bursuc v. Romania*, 2004, § 104에서 조사 대상인 경찰관과 같은 마을의 같은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한 사건 참조)
-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고용주였던 내무부 대변인은 범죄수사 시작 3일 후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에 청구인이 경찰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경우(*Emin Huseynov v. Azerbaijan*, 2015, § 74)
- 두 번째 청구인, 관련 경찰관 및 목격자를 면담하거나 두 번째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법의학 검사를 명령하는 등 독립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사관의 행위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Đurđević v. Croatia*, 2011, §§ 89-90)
- 수사관들은 청구인이나 다른 증인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어떤 식으로든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및 그 동료들을 포함하여 경찰관이 제공한 사건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정당한 근거 없이 형사 사건의 정황을 확인한 경우(*Virabyan v. Armenia*, 2012, §§ 165-167, 또한 *Suleymanov v. Russia*, 2013, § 144 참조)

- 검찰이 수사중인 경찰과 동일한 지휘체계를 따르는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한 경우(*Baranin and Vukčević v. Montenegro*, 2021, § 144)

131. 반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 피소된 행정당국이 또는 그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독립성이 결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경우(*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207)
- 형사소송이라는 맥락에서 사법 당국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적인 행정당국이 조사를 수행한 경우(*P.M. and F.F. v. France*, 2021, § 71)
- 수사 대상자로부터 위계질서 및 제도의 측면에서 독립된 주 검찰청이 수사를 맡아 모든 수사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필요한 위계적 또는 제도적 독립성이 결여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은 경우(*V.D. v. Croatia (no. 2)*, 2018, § 69)

3. 충분성

132. 조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충분해야 한다. 즉,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집행된 강제력이 정당한지 판단하고 책임자를 식별하여 적절한 경우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Labita v. Italy* [GC], 2000, § 131; *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103). 그렇지 않으면 고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금지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을 것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국가의 대리인이 사실상 면책권을 가지고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Cestaro v. Italy*, 2015, § 204).

133. 조사는 철저해야 하는데, 즉 당국은 항상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고 성급하거나 근거 없는 결론에 의존하여 조사를 종결하거나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목격자 증언 및 법의학 증거와 같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에서 상해의 원인이나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권한을 저해하는 조사상 결함은 충분성 기준을 위배할 위험이 있다(*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2, § 183).

134. 재판소는 문제가 된 조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당국이 경찰의 학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대부분 가해자 및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경찰 내부기록에 의존한 경우(*M.F. v. Hungary*, 2017, § 55, 또한 *Archip v. Romania*, 2011, §§ 66-71에서 사법 당국이 실제 상황에 대한 여러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건의 사실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으며 수사당국이 증거 평가에 있어서 선택적이고 다소 일관성 없는 접근방식을 채택한 사건 참조)
- 관계당국은 신뢰할 만한 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공식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M.S. v. Croatia (no. 2)*, 2015, §§ 81-84, 또한 *Hovhannisyan v. Armenia*, 2018, §§ 58-59 참조)
- 학대 가해자 중 한 명은 청구인이 신원을 밝혔음에도 공식적인 신원 확인 및 기소도 없었던 경우(*Barovov v. Russia*, 2021, § 39)
- 국내 당국이 청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식별 번호나 문자 없이 마스크를 착용한 특수 부대 경찰관의 신원을 밝히지도 심문하지도 못한 경우(*Hristovi v. Bulgaria*, 2011, § 91)

- 관계당국이 절차상 오류를 범하여 주요 증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따라 형사소송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2008, §§ 92-97)

135. 반면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수행한 다양한 조치를 참작하여 조사의 충분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 *Baklanov v. Ukraine*, 2013 사건에서 청구인이 의무 복무 과정에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우
- *V.D. v. Croatia (no. 2)*, 2018 사건에서 재판소가 이전에 제3조 위반을 인정한 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주 검찰청이 수사를 새로 시작한 경우
- *P.M. and F.F. v. France*, 2021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문 과정과 경찰서 구금 상태에서 경찰에 의한 학대를 주장한 경우

4. 즉시성 및 합리적 신속성

136. 제3조에 따라 조사는 즉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나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대 혐의를 조사할 때 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법치 준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를 공모하거나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21).

137. 재판소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 당국의 조사는 즉각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3단계의 사법 절차를 거치며 8년 4개월이 경과한 경우(*D.M.D. v. Romania*, 2017, § 53, 또한 청구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후 제1심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년 이상 경과한 판례 *Y. v. Slovenia*, 2015, § 99 참조)
- 교도소 내 학대로, 교도관들에 대한 재판이 형사고소가 제기된 후 5년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시작되었으며 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할 당시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었던 경우(*Indelicato v. Italy*, 2001, § 37)
- 증인의 신원 확인 또는 진술 청취가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Baranin and Vukčević v. Montenegro*, 2021, § 142, 11; *Mătășaru and Savițchi v. Moldova*, 2010, §§ 88 및 93)
- 형사소송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2007, §§ 101-103, 또한 *Barovov v. Russia*, 2021, §§ 39 및 42)
- 핵심 전문가와의 면담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고, 학대의 명확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장기간이었지만 단 한 건의 판결도 채택되지 않은 경우(*I.E.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0, § 52)
- 미성년자이자 인종적 동기에 의한 학대 혐의의 피해자인 청구인들로부터 구술 증거 확보가 지연된 경우(*M.B. and Others v. Slovakia*, 2021, §§ 82-83)
- 가정폭력 상황에서 폭행, 괴롭힘, 위협, 학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는 여러 차례의 조사와 그에 따른 형사재판이,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시간이 제한되거나 사건 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계류 중이었던 경우(*M.S. v. Italy*, 2022, §§ 141 및 150)

138. 반면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사가 즉시성 및 합리적 신속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조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수행된 조사 범위 때문으로, 수많은 심리와 4회 이상의 전문가 평가가 수행된 경우(*Ghedir and Others v. France*, 2015, § 133)
- 보상절차가 매우 장기간(15년)에 걸쳐 진행됐지만, 청구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힌 사실을 증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Isayeva v. Ukraine*, 2018, §§ 63-66)
- 여러 증인을 심문하고 전문가 보고서 및 사건에 관한 기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건이었지만, 조사기간이 총 6개월 정도였던 경우(*V.D. v. Croatia (no. 2)*, 2018, § 80)

5. 공개 검증 및 피해자의 참여

139. 수사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공개 검증의 요소를 충분히 도입하여야 한다(*Al Nashiri v. Romania*, 2018, § 641 및 인용판례)

140. 또한 피해자는 조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Bouyid v. Belgium* [GC], 2015, § 122; *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9). 그러나 경찰 보고서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거나 게시하면 사인이나 기타 수사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 수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자동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 접근이 필요하다면 다른 절차 단계에서 접근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사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특정한 수사 조치를 요청하는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Stevan Petrović v. Serbia*, 2021, § 109).

141.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조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공개 검증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수사관은 피해자의 말을 직접 청취하지 않았고, 결정문에는 피해자들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해당 결정문이 피해자들에게 송달되지도 않은 경우(*Dedovskiy and Others v. Russia*, 2008, § 92)
- 국내법에 사전 소송단계에서 사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으며, 특히 접근을 거절하거나 허용하는 근거, 청구인에게 허용 가능한 접근의 범위, 관련 요청의 심사기간 및 접근 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Oleksiy Mykhaylovych Zakharkin v. Ukraine*, 2010, § 73)
- 당국이 내린 결정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청구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등 국내법에 명확한 요건이 있지만 정보를 보류한 경우(*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2019, § 166)

142. 반면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 파일에 접근하게 하며, 피해자가 조사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증거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개 검증이나 피해자 참여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V.D. v. Croatia (no. 2)*, 2018, §§ 78).

E. 기소, 제재 및 보상 관련 사안

143. 재판소는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할 의무는 결과에 대한 의무가 아닌 수단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86). 공식 조사로 국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된 경우, 재판 단계도 포함한 전체 소송절차가 협약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처벌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판결이나 일정한 형량을 내려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는 없지만, 국내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신의 완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공격을 방치하거나, 중범죄가 가벼운 처벌로 그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 및 확대

금지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의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원이 사건을 어느 정도까지 신중하게 검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재판소가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다(*Sabalić v. Croatia*, 2021, § 97).

144. 따라서 재판소는 국가 당국과 법원이 학대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되, 재판소는 일정한 검토 권한을 행사하여 행위의 중대성과 부과된 형벌 간 비례성의 상실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개입해야 한다(*Myumyun v. Bulgaria*, 2015, § 67).

145.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실제로 효과적이 되려면 국가가 제3조에 위배되는 관행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Cestaro v. Italy*, 2015, § 209).

146. 국가 대리인이 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직무는 정지되어야 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임되어야 한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25; *Barovov v. Russia*, 2021, § 43).

147. 또한 재판소는 국가 대리인이 가한 고문이나 학대 관련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형사절차를 중단하지 않아야 하며, 더불어 이러한 경우 사면(유죄판결 전후)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방식은 협약의 요건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유연하지 않은 공소시효는 인정하기 어렵다(*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2014, § 326). 이 원칙은 특히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관련된 경우, 사인이 저지른 폭력 행위에도 확대 적용되었다(신체 폭행은 *Pulfer v. Albania*, 2018, § 83, 성범죄는 *E.G.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1, § 43 및 가정 폭력은 *M.S. v. Italy*, 2022, § 144 참조).

148. 따라서 재판소는 당국이 즉각적으로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고문 또는 그 외 형태의 학대를 덜 심각한 범죄로 잘못 구분하여 시효 기간이 단축되어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피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적 측면이 위반되었다고 판결하였다(실질적으로 고문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 유죄 판결 및 처벌에 대한 시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자문 의견 [GC], §§ 61-62, 2022).

149. 마지막으로, 제3조를 위반한 국가 대리인에 의한 고의적 학대의 경우, 재판소는 충분한 교정(矯正)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판결하였다. 첫째, 국가 당국은 책임자의 신원 확인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했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경우 또는 적어도 청구인이 학대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Gäfgen v. Germany* [GC], 2010, § 116; *Razzakov v. Russia*, 2015, § 50).

F. 중요 범죄 조사

150. 재판소는 인종차별적 폭력에서 당국이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당국의 권한에 대한 소수자의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계속해서 재차 확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종차별적 성격의 공격에 대한 조사는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Antayev and Others v. Russia*, 2014, § 110). 151. 따라서 인종차별적 태도가 의심되는 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 당국은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인종에 근거한 증오심이나 편견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종적 동기에 의한 폭력과 잔인성을 인종차별적 함의가 없는 사건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기본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다(*Abdu v. Bulgaria*, 2014, § 44). 이러한 의무는 제3조와 함께 고려하는 협약 제14조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책임의 일부이면서 협약 제3조에서 파생되는 절차적 의무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M.F. v. Hungary*, 2017, § 73). 이러한 의무는 제3조와 양립할 수 없는 유형의 대우가 개인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Abdu v. Bulgaria*, 2014, § 44).

152. 나아가 이러한 조사는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지위나 특성에 기초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위 또는 보호대상 특징을 실제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타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또는 가능하게 맺은 연관성이나 소속 관계에 근거한 폭력 행위에도 적용된다(*Škorjanec v. Croatia*, 2017, § 56).

153. 인종적 동기를 증명하는 것은 종종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 피청구국의 의무는 폭력행위에 인종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의무이지만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당국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행동하여 증거를 수집·확보하고, 실질적인 수단을 모두 조사하여 진실을 발견하며, 완전한 근거를 갖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되 인종적인 동기로 행한 폭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사실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Antayev and Others v. Russia*, 2014, § 122).

154. 이와 동일한 고려사항은 종교적 무관용 등에서 기인한 폭력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또는 성적 지향성이 동기가 된 폭력의 경우에도 발생한다(*Sabalić v. Croatia*, 2021, § 94).

155. 자세한 내용은 *제14조 및 제12의정서 제1조 차별의 금지에 대한 판례 해설서(Case-Law Guide on Article 14 and Article 1 of Protocol No. 12 -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를 참조하라.

G.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절차적 의무

156. 범죄수사의 실효성 요건에는 일부 사안에서 수사당국이 다른 국가의 당국과 협력할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불가피하게 주요 증거물이 해당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용의자가 그곳으로 도피했거나 하는 사건별 정황에 달려있게 된다. 즉 관련 국가가 상호 사법공조 및 형사문제 협력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항을 성실히 검토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재판소는 협약 이외의 국제조약이나 의무를 존중하는지 감독할 권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피청구국이 해당 조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을 실제로 활용하였는지 확인한다(*X and others v. Bulgaria* [GC], 2021, § 19).

H. 절차적 의무의 부활

157. 절차적 의무는 이전 조사 또는 재판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정황이 발생한 이후 부활할 수 있다(*Egmez v. Cyprus* (dec.), 2012, § 63 참조). 절차적 의무가 요구하는 후속 조사의 성격과 범위는 불가피하게 사건별 정황에 달려있을 것이며 확대가 발생한 직후에 예상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Jeronovičs v. Latvia* [GC], 2016, § 107).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3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A—

[A v. Russia](#), no. 37735/09, 12 November 2019
[A.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A and B v. Croatia](#), no. 7144/15, 20 June 2019
[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3455/05, ECHR 2009
[A.L. \(X.W.\) v. Russia](#), no. 44095/14, 29 October 2015
[A.P. v. Slovakia](#), no. 10465/17, 28 January 2020
[A.P., Garçon and Nicot v. France](#), nos. 79885/12 and 2 others, 6 April 2017
[Abdu v. Bulgaria](#), no. 26827/08, 11 March 2014
[Abdyusheva and Others v. Russia](#), nos. 58502/11 and 2 others, 26 November 2019
[Abu Zubaydah v. Lithuania](#), no. 46454/11, 31 May 2018
[Advisory opinion on the applicability of statutes of limitation to prosecution, conviction and punishment in respect of an offence constituting, in substance, an act of torture](#) [GC], request no. P16-2021-001, Armenian Court of Cassation, 26 April 2022
[Aggerholm v. Denmark](#), no. 45439/18, 15 September 2020
[Aghdgomelashvili and Japaridze v. Georgia](#), no. 7224/11, 8 October 2020
[Akkad v. Türkiye](#), no.1557/19, 21 June 2022
[Akkum v. Turkey](#), no. 21894/93, ECHR 2005-II (extracts)
[Akpınar and Altun v. Turkey](#), no. 56760/00, 27 February 2007
[Aksoy v. Turkey](#),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Ali Güneş v. Turkey](#), no. 9829/07, 10 April 2012
[Al Nashiri v. Poland](#), no. 28761/11, 24 July 2014
[Al Nashiri v. Romania](#), no. 33234/12, 31 May 2018
[Al-Saadoon and Mufdhi v. the United Kingdom](#), no. 61498/08, ECHR 2010
[Ananyev and Others v. Russia](#), nos. 42525/07 and 60800/08, 10 January 2012
[Angelova and Iliev v. Bulgaria](#), no. 55523/00, 26 July 2007
[Antayev and Others v. Russia](#), no. 37966/07, 3 July 2014
[Anzhelo Georgiev and Others v. Bulgaria](#), no. 51284/09, 30 September 2014

[Archip v. Romania](#), no. 49608/08, 27 September 2011
[Assenov and Others v. Bulgaria](#), 28 Octo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I
[Association Innocence en Danger and Association Enfance et Partage v. France](#), nos. 15343/15 and 16806/15, 4 June 2020
[Aswat v. UK](#), no. 17299/12, 16 April 2013
[Aydin v. Turkey](#), 25 Sept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B—

[Babar Ahma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s. 24027/07 and 4 others, 10 April 2012
[Baklanov v. Ukraine](#), no. 44425/08, 24 October 2013
[Baranin and Vukčević v. Montenegro](#), nos. 24655/18 and 24656/18, 11 March 2021
[Barovov v. Russia](#), no. 9183/09, 15 June 2021
[Barbotin v. France](#), no. 25338/16, 19 November 2020
[Barta v. Hungary](#), no. 26137/04, 10 April 2007
[Bataliny v. Russia](#), no. 10060/07, 23 July 2015
[Bati and Others v. Turkey](#), nos. 33097/96 and 57834/00, ECHR 2004-IV (extracts)
[Beganović v. Croatia](#), no. 46423/06, 25 June 2009
[Berliński v. Poland](#), nos. 27715/95 and 30209/96, 20 June 2002
[Blokhin v. Russia](#)[GC], no. 47152/06, 23 March 2016
[Boicenco v. Moldova](#), no. 41088/05, 11 July 2006
[Boukrourou and Others v. France](#), no. 30059/15, 16 November 2017
[Bouyid v. Belgium](#) [GC], no. 23380/09, ECHR 2015
[Burliya and Others v. Ukraine](#), no. 3289/10, 6 November 2018
[Bursuc v. Romania](#), no. 42066/98, 12 October 2004
[Buturugă v. Romania](#), no. 56867/15, 11 February 2020

—C—

[Cangöz and Others v. Turkey](#), no. 7469/06, 26 April 2016
[Castellani v. France](#), no. 43207/16, 30 April 2020
[Cazan v. Romania](#), no. 30050/12, 5 April 2016
[Cestaro v. Italy](#), no. 6884/11, 7 April 2015
[Chember v. Russia](#), no. 7188/03, ECHR 2008
[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no. 74768/10 18 June 2019
[Ciorap v. Moldova](#), no. 12066/02, 19 June 2007
[Comorașu v. Romania](#), no. 16270/12, 31 May 2016
[Cyprus v. Turkey](#) [GC], no. 25781/94, ECHR 2001-IV

—D—

[D.F. v. Latvia](#), no. 11160/07, 29 October 2013
[D.M.D. v. Romania](#), no. 23022/13, 3 October 2017
[D.P. and J.C. v. the United Kingdom](#), no. 38719/97, 10 October 2002
[Daşlık v. Turkey](#), no. 38305/07, 13 June 2017
[Dedovskiy and Others v. Russia](#), no. 7178/03, ECHR 2008 (extracts)
[Dembele v. Switzerland](#), no. 74010/11, 24 September 2013
[Đorđević v. Croatia](#), no. 41526/10, ECHR 2012
[Đurđević v. Croatia](#), no. 52442/09, ECHR 2011 (extracts)

[Dvořáček v. the Czech Republic](#), no. 12927/13, 6 November 2014

—E—

[E.G.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37882/13, 13 April 2021
[Egmez v. Cyprus \(dec.\)](#), no. 12214/071, 18 September 2012
[Elberte v. Latvia](#), no. 61243/08, ECHR 2015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39630/09, ECHR 2012
[Emin Huseynov v. Azerbaijan](#), no. 59135/09, 7 May 2015
[Enea v. Italy](#) [GC], no. 74912/01, ECHR 2009
[Enzile Özdemir v. Turkey](#), no. 54169/00, 8 January 2008
[Erdal Aslan v. Turkey](#), nos. 25060/02 and 1705/03, 2 December 2008

—F—

[Filippovy v. Russia](#), no. 19355/09, 22 March 2022

—G—

[Gäfgen v. Germany](#) [GC], no. 22978/05, ECHR 2010
[Georgel and Georgeta Stoicescu v. Romania](#), no. 9718/03, 26 July 2011
[Georgia v. Russia \(I\)](#) [GC], no. 13255/07, ECHR 2014 (extracts)
[Georgia v. Russia \(II\)](#) [GC] (merits), no. 38263/08, 21 January 2021
[Ghedir and Others v. France](#), no. 20579/12, 16 July 2015
[Gorobet v. Moldova](#), no. 30951/10, 11 October 2011
[Gutsanovi v. Bulgaria](#), no. 34529/10, ECHR 2013 (extracts)

—H—

[Harkins and Edwards v. the United Kingdom](#), nos. 9146/07 and 32650/07, 17 January 2012
[Hasan İlhan v. Turkey](#), no. 22494/93, 9 November 2004
[Herczegfalvy v. Austria](#), 24 September 1992, Series A no. 244
[Hristovi v. Bulgaria](#), no. 42697/05, 11 October 2011
[Hristozov and Others v. Bulgaria](#), nos. 47039/11 and 358/12, ECHR 2012 (extracts)
[Hovhannisyan v. Armenia](#), no. 18419/13, 19 July 2018
[Hudorovič and Others v. Slovenia](#), nos. 24816/14 and 25140/14, 10 March 2020
[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GC], no. 57592/08, 17 January 2017

—I—

[I.C. v. Romania](#), no. 36934/08, 24 May 2016
[I.E.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5422/13, 26 May 2020
[Idalov v. Russia](#) [GC], no. 5826/03, 22 May 2012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no. 73235/12, 12 May 2015
[Ilaşcu and Others v. Moldova and Russia](#) [GC], no. 48787/99, ECHR 2004-VII
[İlhan v. Turkey](#) [GC], no. 22277/93, ECHR 2000-VII
[Ilias and Ahmed v. Hungary](#) [GC], no. 47287/15, 21 November 2019

[Ilievi and Ganchevi v. Bulgaria](#), nos. 69154/11 and 69163/11, 8 June 2021
[İltümür Ozan and Others v. Turkey](#), no. 38949/09, 16 February 2021
[Imakayeva v. Russia](#), no. 7615/02, ECHR 2006-XIII (extracts)
[Indelicato v. Italy](#), no. 31143/96, 18 October 2001
[Ioan Pop and Others v. Romania](#), no. 52924/09, 6 December 2016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revision\)](#), no. 5310/71, 20 March 2018
[Irina Smirnova v. Ukraine](#), no. 1870/05, 13 October 2016
[Isayeva v. Ukraine](#), no. 35523/06, 4 December 2018
[Iwańczuk v. Poland](#), no. 25196/94, 15 November 2001
[İzci v. Turkey](#), no. 42606/05, 23 July 2013

—J—

[J.M. v. France](#), no. 71670/14, 5 December 2019
[Jalloh v. Germany \[GC\]](#), no. 54810/00, ECHR 2006-IX
[Janowiec and Others v. Russia \[GC\]](#), nos. 55508/07 and 29520/09, ECHR 2013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5 July 2016

—K—

[Kagirov v. Russia](#), no. 36367/09, 23 April 2015
[Kanciał v. Poland](#), no. 37023/13, 23 May 2019
[Kalashnikov v. Russia](#), no. 47095/99, ECHR 2002-VI
[Karachentsev v. Russia](#), no. 23229/11, 17 April 2018
[Khadzhaliyev and Others v. Russia](#), no. 3013/04, 6 November 2008
[Khan v. France](#), no. 12267/16, 28 February 2019
[Khasanov and Rakhmanov v. Russia \[GC\]](#), nos. 28492/15 and 49975/15, 29 April 2022
[Khlaifia and Others v. Italy \[GC\]](#), no. 16483/12, ECHR 2016 (extracts)
[Korneykova and Korneykov v. Ukraine](#), no. 56660/12, 24 March 2016
[Krsmanović v. Serbia](#), no. 19796/14, 19 December 2017
[Kudła v. Poland \[GC\]](#), no. 30210/96, ECHR 2000-XI
[Kurt v. Austria \[GC\]](#), no. 62903/15, 15 June 2021

—L—

[Labita v. Italy \[GC\]](#), no. 26772/95, ECHR 2000-IV
[López Ostra v. Spain](#),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3-C
[Lutsenko and Verbytskyi v. Ukraine](#), nos. 12482/14 and 39800/14, 21 January 2021
[Lyalyakin v. Russia](#), no. 31305/09, 12 March 2015
[Lyapin v. Russia](#), no. 46956/09, 24 July 2014

—M—

[M. and M. v. Croatia](#), no. 10161/13, ECHR 2015 (extracts)
[M.B. and Others v. Slovakia](#), no. 45322/17, 1 April 2021
[M.C. v. Bulgaria](#), no. 39272/98, ECHR 2003-XII
[M.F. v. Hungary](#), no. 45855/12, 31 October 2017

M.G.C. v. Romania, no. 61495/11, 15 March 2016
M.K. and Others v. Poland, nos. 40503/17 and 2 others, 23 July 2020
M.P. and Others v. Bulgaria, no. 22457/08, 15 November 2011
M.S. v. Croatia (no. 2), no. 75450/12, 19 February 2015
M.S. v. Italy, no. 32715/19, 7 July 2022
M.S.S. v. Belgium and Greece [GC], no. 30696/09, ECHR 2011
Mafalani v. Croatia, no. 32325/13, 9 July 2015
Makaratzis v. Greece [GC], no. 50385/99, ECHR 2004-XI
Marguš v. Croatia [GC], no. 4455/10, ECHR 2014 (extracts)
Maslova and Nalbandov v. Russia, no. 839/02, 24 January 2008
Mătășaru and Savițchi v. Moldova, no. 38281/08, 2 November 2010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no. 71156/01, 3 May 2007
Milanović v. Serbia, no. 44614/07, 14 December 2010
Mocanu and Others v. Romania [GC], nos. 10865/09 and 2 others, ECHR 2014 (extracts)
Mozer v. Moldova and Russia [GC], no. 11138/10, 23 February 2016
Mubilanzila Mayeka and Kaniki Mitunga v. Belgium, no. 13178/03, ECHR 2006-XI
Murray v. the Netherlands [GC], no. 10511/10, 26 April 2016
Muršić v. Croatia [GC], no. 7334/13, ECHR 2016
Musayev and Others v. Russia, nos. 57941/00 and 2 others, 26 July 2007
Mustafa Tunç and Fecire Tunç v. Turkey [GC], no. 24014/05, 14 April 2015
Myumyun v. Bulgaria, no. 67258/13, 3 November 2015

—N—

N.B. v. Slovakia, no. 29518/10, 12 June 2012
N.Ç. v. Turkey, no. 40591/11, 9 February 2021
N.H. and Others v. France, nos. 28820/13 and 2 others, 2 July 2020
N.P. and N.I. v. Bulgaria (dec.), no. 72226/11, 3 May 2016
Najafli v. Azerbaijan, no. 2594/07, 2 October 2012
Naoumenko v. Ukraine, no. 42023/98, 10 February 2004
Necdet Bulut v. Turkey, no. 77092/01, 20 November 2007
Nesh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36925/10 and 5 others, 27 January 2015
Nesibe Haran v. Turkey, no. 28299/95, 6 October 2005
Nevmerzhitsky v. Ukraine, no. 54825/00, ECHR 2005-II (extracts)
Nicolae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O—

Oganezova v. Armenia, nos. 71367/12 and 72961/12, 17 May 2022
O’Keeffe v. Ireland [GC], no. 35810/09, ECHR 2014 (extracts)
Okkali v. Turkey, no. 52067/99, ECHR 2006-XII (extracts)
Oleksiy Mykhaylovych Zakharkin v. Ukraine, no. 1727/04, 24 June 2010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ECHR 2004-XII
Opuz v. Turkey, no. 33401/02, ECHR 2009
Orhan v. Turkey, no. 25656/94, 18 June 2002
Oya Ataman v. Turkey, no. 74552/01, ECHR 2006-XIV

—P—

[P.M. and F.F. v. France](#), nos. 60324/15 and 60335/15, 18 February 2021
[Pantea v. Romania](#), no. 33343/96, ECHR 2003-VI (extracts)
[Petrosyan v. Azerbaijan](#), no. 32427/16, 4 November 2021
[Portu Juanenea and Sarasola Yarzabal v. Spain](#), no. 1653/13, 13 February 2018
[Pranjić-M-Luk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938/16, 2 June 2020
[Premininny v. Russia](#), no. 44973/04, 10 February 2011
[Pulfer v. Albania](#), no. 31959/13, 20 November 2018

—R—

[R.B. v. Estonia](#), no. 22597/16, 22 June 2021
[R.R. v. Poland](#), no. 27617/04, ECHR 2011 (extracts)
[R.R. and R.D. v. Slovakia](#), no. 20649/18, 1 September 2020
[R.S. v. Hungary](#), no. 65290/14, 2 July 2019
[Rachwalski and Ferenc v. Poland](#), no. 47709/99, 28 July 2009
[Ramirez Sanchez v. France](#) [GC], no. 59450/00, ECHR 2006-IX
[Raninen v. Finland](#),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Razzakov v. Russia](#), no. 57519/09, 5 February 2015
[Rod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 22893/05, 27 May 2008
[Rooman v. Belgium](#) [GC], no. 18052/11, 31 January 2019
[Roth v. Germany](#), nos. 6780/18 and 30776/18, 22 October 2020

—S—

[S.M. v. Croatia](#) [GC], no. 60561/14, 25 June 2020
[Sabalić v. Croatia](#), no. 50231/13, 14 January 2021
[Sakir v. Greece](#), no. 48475/09, 24 March 2016
[Salakhov and Islyamova v. Ukraine](#), no. 28005/08, 14 March 2013
[Salman v. Turkey](#) [GC], no. 21986/93, ECHR 2000-VII
[Satybalova and Others v. Russia](#), no. 79947/12, 30 June 2020
[Savran v. Denmark](#) [GC], no. 57467/15, 7 December 2021
[Schmidt v. Germany](#) (dec.), no. 32352/02, 5 January 2006
[Selçuk and Asker v. Turkey](#), 24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Selmouni v. France](#) [GC], no. 25803/94, ECHR 1999-V
[Semache v. France](#), no. 36083/16, 21 June 2018
[Shamayev and Others v. Georgia and Russia](#), no. 36378/02, ECHR 2005-III
[Shlykov and Others v. Russia](#), nos. 78638/11 and 3 others, 19 January 2021
[Shmorgunov and Others v. Ukraine](#), nos. 15367/14 and 13 others, 21 January 2021
[Šilih v. Slovenia](#) [GC], no. 71463/01, 9 April 2009
[Simeonovi v. Bulgaria](#) [GC], no. 21980/04, 12 May 2017
[Škorjanec v. Croatia](#), no. 25536/14, 28 March 2017
[Slyusarev v. Russia](#), no. 60333/00, 20 April 2010
[Smith and Grady v. the United Kingdom](#), nos. 33985/96 and 33986/96, ECHR 1999-VI
[Soare and Others v. Romania](#), no. 24329/02, 22 February 2011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7 July 1989, Series A no. 161
[Stanimirović v. Serbia](#), no. 26088/06, 18 October 2011
[Stefanou v. Greece](#), no. 2954/07, 22 April 2010
[Stevan Petrović v. Serbia](#), nos. 6097/16 and 28999/19, 20 April 2021

[Strazimiri v. Albania](#), no. 34602/16, 21 January 2020
[Suleymanov v. Russia](#), no. 32501/11, 22 January 2013
[Svinarenko and Slyadnev v. Russia](#) [GC], nos. 32541/08 and 43441/08, ECHR 2014 (extracts)

—T—

[T.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724/94, 16 December 1999
[T.M. and C.M.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6608/11, 28 January 2014
[Tabesh v. Greece](#), no. 8256/07, 26 November 2009
[Tali v. Estonia](#), no. 66393/10, 13 February 2014
[Talpis v. Italy](#), no. 41237/14, 2 March 2017
[Tarak and Depe v. Turkey](#), no. 70472/12, 9 April 2019
[Taştan v. Turkey](#), no. 63748/00, 4 March 2008
[Trévalec v. Belgium](#), no. 30812/07, 14 June 2011
[Tunikova and Others v. Russia](#), no. 55974/16 and 3 others, 14 December 2021
[Tyrrer v. the United Kingdom](#), 25 April 1978, Series A no. 26

—V—

[V. v. the United Kingdom](#) [GC], no. 24888/94, ECHR 1999-IX
[V.C. v. Slovakia](#), no. 18968/07, ECHR 2011 (extracts)
[V.D. v. Croatia \(no. 2\)](#), no. 19421/15, 15 November 2018
[V.K. v. Russia](#), no. 68059/13, 7 March 2017
[Valašinas v. Lithuania](#), no. 44558/98, ECHR 2001-VIII
[Varnava and Others v. Turkey](#) [GC], nos. 16064/90 and 8 others, ECHR 2009
[Vincent v. France](#), no. 6253/03, 24 October 2006
[Vinter and Others](#) [GC], nos. 66069/09 and 2 others, ECHR 2013 (extracts)
[Virabyan v. Armenia](#), no. 40094/05, 2 October 2012
[Virgiliu Tănase v. Romania](#) [GC], no. 41720/13, 25 June 2019
[Vladimir Romanov v. Russia](#), no. 41461/02, 24 July 2008
[Volodina v. Russia](#), no. 41261/17, 9 July 2019

—W—

[Wainwright v. the United Kingdom](#), no. 12350/04, ECHR 2006-X
[Wieser v. Austria](#), no. 2293/03, 22 February 2007
[Willcox and Hurford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43759/10 and 43771/12, ECHR 2013
[Women’s Initiatives Supporting Group and Others v. Georgia](#), no. 73204/13 and 74959/13,
16 December 2021

—X—

[X and Others v. Bulgaria](#) [GC], no. 22457/16, 2 February 2021

—Y—

[Y v. Bulgaria](#), no. 41990/18, 20 February 2020

[Y. v. Slovenia](#), no. 41107/10, ECHR 2015 (extracts)
[Yankov v. Bulgaria](#), no. 39084/97, ECHR 2003-XII (extracts)
[Yaroslav Belousov v. Russia](#), nos. 2653/13 and 60980/14, 4 October 2016
[Yatsenko v. Ukraine](#), no. 75345/01, 16 February 2012
[Yotova v. Bulgaria](#), no. 43606/04, 23 October 2012

—Z—

[Z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29392/95, ECHR 2001-V
[Z.A. and Others v. Russia](#) [GC], nos. 61411/15 and 3 others, 21 November 2019
[Zakharov and Varzhabetyan v. Russia](#), nos. 35880/14 and 75926/17, 13 October 2020
[Zherdev v. Ukraine](#), no. 34015/07, 27 April 2017
[Zontul v. Greece](#), no. 12294/07, 17 January 2012